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4.

특 허 청  
(특허심사제도과)

법제처 심사 전

## 1. 개정이유

무권리자가 출원한 실용신안권이 정당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전등록된 경우 고안자 정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간 합의에 따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 변경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무권리자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시 고안자 정정 요건 완화(안 제28조)

실용신안권자가 고안자를 추가·정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무권리자가 출원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이전을 청구하여 실용신안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확인서류의 제출이 곤란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약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접근코드 필수 기재(안 별지제1호서식)

국가 간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로 일원화될 예정이므로,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때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에 대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DAS 접근코드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제 호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고안자를 추가·삭제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서식에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9호나목 중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송달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근코드]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① ~ ③<br>(생략)<br><u>&lt;신설&gt;</u> | 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① ~ ③<br>(현행과 같음)<br><u>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u><br><u>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u><br><u>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용신</u><br><u>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고</u><br><u>안자를 추가·삭제 또는 정정하</u><br><u>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u><br><u>른 서식에 실용신안권자 및 신</u><br><u>청 전·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u><br><u>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u><br><u>지 아니할 수 있다.</u> |